

##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제302호
의결 년월일	2002.9.10 (제99회)

발의년월일 : 2002. 9. 9.

발 의 자 : 김제광의원등 25인

### □ 제안이유

-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도 이제 10여년이 지나 정착단계에 있으며 각종 규제의 완화로 시민생활의 불편이 해소되고 있으나 아직도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부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하고,
- 각종 조례에 의하여 시민생활에 불편과 초래하고 목적달성이나 실효성이 없는 조례나 제정 후 사장되고 있는 조례를 발췌하여 현실성 있게 정비 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례제정
- 각 위원회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검토 후 조례정비.
-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
- 조례제정 후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의 정비.
-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 민원과 숙원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조례의 정비.

관련 법 규

-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참 고 사 항

- 구성인원 : 9명(각 상임위원회 3명씩)
- 활동기간 : 2002. 11. 1 ~ 2003. 10.30(1년간)